



제 432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임기 만료 은행장의 직무수행 근거 신설〉
■ 박수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4456호)

2026. 2.

재정경제기획위원회
전문위원 임명현

목 차

I . 제안경 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임기 만료 은행장의 직무수행 근거 신설(안 제12조제3항 신설)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박수영의원 등 11인

나. 발 의 일 : 2025. 11. 21.

다. 회 부 일 : 2025. 11. 24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,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항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임기 만료 은행장의 직무수행 근거 신설(안 제12조제3항 신설)

현행	개정안
○ 임원임기(§12) - 임기: 3년, 중임가능 -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 - <신설>	○ 임원임기(§12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임기가 만료된 은행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

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.
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함.¹⁾ 이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시까지 직무를

1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임기)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·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,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.

②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.

1. 기관장 :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
2. 상임이사 :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
3. 비상임이사 및 감사 :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

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

수행할 수 있음.

그런데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없음. 이에 따라 각 기타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개별법에 임원이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,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시 기관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한국수출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데,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 제12조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임을 허용하고 있음. 또한,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, 그 임기는 마찬가지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.²⁾ 그런데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.

이와 같은 규정의 부재로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임기가 2025년 7월에 만료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, 전무이사가 직무대행을 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수출입은행 지도부에 공백이 생겼음³⁾.

2)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

제12조 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,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

3) 2025.11.5. 신규 수출입은행장 임명

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임.

참고로, 개정안과 같이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개별법에서 임원 또는 기관장이 임기 만료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음. 예를 들어 「한국투자공사법」 제21조제3항은 임기가 만료된 한국투자공사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⁴⁾ 「항만공사법」 제18조제2항은 임기가 끝난 항만공사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⁵⁾

다만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한국투자공사법」 등 개별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은행장뿐만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 임원 전체에 대해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4) 「한국투자공사법」

제21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②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.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.

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

5) 「항만공사법」

제18조(임원의 임기)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.

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※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임기가 만료된 은행장은 후임자 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.</u>

문의처

02)6788-5148